

사문서범죄 양형기준안 설명자료

I. 사문서범죄의 구성요건 및 법정형

조문	죄명	구성요건	형량
형법 231	사문서등위 변조	행사할 목적으로 권리·의무 또는 사실증 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	징역-5년 이하 벌금-1,000만원 이 하
형법 232	자격모용사 문서등작성	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·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 는 도화를 작성한 자	징역-5년 이하 벌금-1,000만원 이 하
형법 232의 2	사전자기록 위작·변작	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·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 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 한 자	징역-5년 이하 벌금-1,000만원 이 하
형법 233	허위진단서 등 작성	의사·한의사·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 서,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	징역·금고-3년 이하 자격정지-7년 이하 벌금-3,000만원 이 하
형법 234	위조등사문 서행사	제231조 내지 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 어진 문서,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 기록매체기록을 행사한 자	각 죄의 정한형
형법 246	사문서부정 행사	권리·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	징역-1년 이하 벌금-300만원 이하

II. 형량범위 · 양형인자

1. 대유형 분류

- ▣ 공문서범죄의 대유형 분류방식대로, ‘작성권한의 여부’ 라는 기준에 따라, (1)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다른 사람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거나 행사하는 범죄와, (2) 작성권한이 있으나 그 내용이 허위인 범죄로 구분하여 대유형 분류
- ▣ 전자의 범죄에는 사문서위조·변조, 자격모용사문서등작성, 사전자기록위작·변작, 위 각 범죄의 행사죄가 포함되며, 후자의 범죄에는 허위진단서작성죄가 해당됨
- ▣ 위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사문서범죄에 사문서부정행사죄가 있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을 설정하지 않기로 함

2. 사문서위조·변조·행사·자격모용 범죄

가. 구성요건

조문	죄명	구성요건	형량
형법 231	사문서등위 변조	행사할 목적으로 권리·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	징역-5년 이하 벌금-1,000만원 이하
형법 232	자격모용사문서등작성	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·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	징역-5년 이하 벌금-1,000만원 이하
형법 232의 2	사전자기록 위작·변작	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·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	징역-5년 이하 벌금-1,000만원 이하
형법	위조등사문	제231조 내지 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	각 죄의 정한형

234	서행사	어진 문서,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 기록매체기록을 행사한 자	
-----	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나. 소유형 분류

- 소유형을 분류하는 방안으로, (1) 단일한 유형으로 규정하는 방안, (2) 범죄 주체에 따라 기업형·조직형 위조범죄와 그 외의 범죄로 분류하는 방안, (3) 범행의 동기와 목적에 따라 중대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는 문서위조 범죄와 그 외의 범죄로 분류하는 방안, (4) 영업적·조직적 범죄와 그 외의 범죄로 분류하는 방안 등이 상정 가능
-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소유형을 분류하지 않고 단일한 형량범위를 설정함이 적정함
 - 판결분석결과 사문서위조 등 범죄의 형량의 편차가 대부분 징역 4월 내지 징역 12개월 사이에 있어 처벌의 경, 중이 있는 유형 분류에 실익이 없음
 - 조직적이거나 영업적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으로 사문서위조를 업으로 하는 위조기술자, 위조조직을 제외하고는 예상하기 어려우며 실제 처벌레도 거의 없음

다. 형량범위

감경	기본	가중
- 1년	6월 - 2년	1년 - 3년

- 공문서위조 범죄의 제1유형(비영업적·비조직적 범죄)의 형량범위와 비교할 때, 상한은 동일하게 설정하고 하한은 약간 낮은 수준으로 설정
- 공문서위조죄의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하인데 반하여 사문서위조

죄의 법정형은 징역 5년 이하라는 점과 실제 판결례의 형량분포를 감안하여 설정

라. 양형인자표

구분		감경요소	가중요소
특별 양형 인자	행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○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위조·변조조직의 우두머리, 간부, 전문위조기술자, 이들과 직접 연결된 알선·전달담당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○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조·변조한 경우 ○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·경제적 피해가 야기된 경우 ○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
	행위자 /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농아자 ○ 심신미약(본인 책임 없음) ○ 자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동종 누범(공문서위조등 포함)
일반 양형 인자	행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소극가담 ○ 변조부분이 문서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경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전문 위조범, 알선책 등에게 의뢰한 경우 ○ 위·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·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○ 처분문서, 증거제출 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서(다만,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·경제적 피해가 야기된 경우는 제외) ○ 전문위조장비(컬러 프린터, 스캐너 등)를 사용한 경우

행위자 /기타	<input type="radio"/> 형사처벌 전력 없음 <input type="radio"/> 진지한 반성	<input type="radio"/> 이종누범,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등 종전과(공문서범죄 포함)
--------------------	--	--

-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
 - 범행가담은 객관적인 범죄 행위 측면의 양형인자이고, 범행동기는 주관적인 측면의 양형인자로 그 성격을 달리하고, 균형상 특별가중 인자와 특별감경인자의 숫자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며, 동기에는 참작사유가 없고 가담정도에는 참작사유가 있는 경우에 비하여 양자에 모두 참작사유가 있는 경우에 형량을 감경할 필요성이 더 높다고 보이므로 하나의 양형인자로 규정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
 - 그러나 공문서범죄의 양형인자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의 양형인자로 규정하였음
-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조한 경우
 - 이 양형인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피고인이 위변조한 문서의 개수를 특정하자는 의견도 있음
 - 그런데 공문서범죄에서도 ‘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’ 라는 양형인자가 설정되어 있는데 이에 해당되기 위한 문서의 개수를 특정하지 않았는바, 그 이유는 문서의 개수를 특정하면 형식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위험성이 있으므로 담당 재판부의 판단에 맡겨두는 것이 더욱 적정한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이었음. 같은 이유에서 사문서범죄에서도 그 개수를 특정하지 않는 것이 적정함

마. 집행유예 기준

구 분	부정적	긍정적
-----	-----	-----

구 분	부정적	긍정적
주요 참작 사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동종전과 (5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, 5년 이내 3회 이상 벌금전과) ○ 사회적·경제적 피해가 중대한 경 우 ○ 영업적·조직적 범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범행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○ 현저한 개전의 정(자수 등) ○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음
일반 참작 사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회 이상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○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○ 범행 후 증거 등의 은폐 내지 은폐시도 ○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○ 반성이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범으로서 소극적 가담 ○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○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○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○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○ 피고인이 고령

3. 허위진단서작성 범죄

가. 구성요건

조문	죄명	구성요건	형량
형법 233	허위진단서 등 작성	의사·한의사·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,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	징역·금고-3년 이하 자격정지-7년 이하 벌금-3,000만원 이하

나. 소유형 분류

▣ 목적에 따라 2개의 소유형으로 분류

● 소극적 사회·경제적 이익 목적

- 자신이나 제3자의 업무상 편의, 편법적인 업무수행 등 소극적 동기에 따른 행위인 경우
- 해당범죄가 많지 않으나, 양형기준의 실질적 필요성과 본질적으로 불법을 달리하는 사례에 대하여 구별되는 형량의 선고를 위해, 별도

의 소유형 설정이 적정함

● 적극적 사회·경제적 이익 목적

- 자기나 제3자의 불법적이거나 부정한 사회경제적 지위나 이득을 취할 의도 아래 이루어진 행위인 경우

다. 형량범위

구 분	감경	기본	가중
제1유형	- 8월	4월 - 10월	8월 - 1년6월
제2유형	6월 - 1년6월	8월 - 2년	1년6월 - 2년6월

● 공문서범죄의 ‘허위공문서작성’ 과 동일하게 형량범위를 설정

라. 양형인자표

구분		감경요소	가중요소
특별 양형 인자	행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○ 허위진단서 작성에 따라 취한 불법적인 이득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·경제적 피해가 경미한 경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·경제적 피해가 야기된 경우 ○ 영업적 또는 조직적 범행 ○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
	행위 자 /기 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농아자 ○ 심신미약(본인 책임 없음) ○ 자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5년 이내 동종(공문서범죄 포함)의 전과 ○ 이득의 은폐 또는 피해회복의 방해
일반 양형 인자	행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소극가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허위진단서를 스스로 사용한 경우
	행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형사처벌의 전력 없음 ○ 진지한 반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이종누범,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(공문서범죄 포함)

자 /기 타		
--------------	--	--

마. 집행유예 기준

구 분	부정적	긍정적
주요 참작 사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5년 이내에 동종전과(벌금형 포함) 있는 경우 ○ 사회적·경제적 폐해가 큰 경우 ○ 범행 동기에 있어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범행 동기에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(거절하기 어려운 자의 지시나 요구에 의한 범행 포함) ○ 현저한 개전의 정(자수 등) ○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음
일반 참작 사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회 이상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있는 경우 ○ 지시·복종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지시 내지 교사 ○ 범행 후 증거 등 은폐 내지 은폐 시도 ○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범으로서 소극적 가담 ○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○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○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○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

4. 사문서부정행사

가. 구성요건

조문	죄명	구성요건	형량
형법	사문서부정	권리·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	징역-1년 이하

246	행사	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	벌금-300만원 이하
-----	----	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

나. 양형기준 설정 여부

- 실제 징역형선고 사례는 1건에 불과하고 대부분 벌금형으로 처리되고 있어 실제 처벌례가 매우 적은 점, 법정형과 실제 처벌형량이 매우 낮은 점을 고려하면, 사문서 부정행사는 별도의 양형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없다고 봄

III. 통계 분석

1. 조사대상 및 방법

- 조사 대상 : 2004.부터 2008.까지 전국 1심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제2기 양형기준 대상사건의 피고인 14,640명에 대한 사건 중 사문서범죄로 분류된 9개 죄명, 717명의 피고인
- 조사 방식 : 형사사건기록과 판결문을 직접 대조
- 분석 방법 : SPSS 통계 프로그램에 의한 카이제곱 검정, 분산분석 및 T-test, 상관분석 및 회귀분석

2. 조사결과

가. 범죄현황

- ▣ 1심 선고일 기준 연도별 분포 현황

단위: 명

세부죄명		연도					전체
		2004년	2005년	2006년	2007년	2008년	
변조사문서행사	수	0	1	0	0	0	1
	비율	0.0%	100.0%	0.0%	0.0%	0.0%	100.0%
사문서변조	수	2	4	2	7	3	18
	비율	11.1%	22.2%	11.1%	38.9%	16.7%	100.0%
사문서부정행사	수	1	1	0	1	2	5

단위: 명

세부죄명		연도					전체
		2004년	2005년	2006년	2007년	2008년	
	비율	20.0%	20.0%	0.0%	20.0%	40.0%	100.0%
	수	17	35	64	39	44	199
사문서위조	비율	8.5%	17.6%	32.2%	19.6%	22.1%	100.0%
	수	0	0	1	0	0	1
사서명위조	비율	0.0%	0.0%	100.0%	0.0%	0.0%	100.0%
	수	0	1	0	0	0	1
위작사전자기록행사	비율	0.0%	100.0%	0.0%	0.0%	0.0%	100.0%
	수	0	1	0	0	0	1
위조사문서행사	비율	9.1%	19.2%	24.6%	22.0%	25.1%	100.0%
	수	39	82	105	94	107	427
위조사서명행사	비율	0.0%	0.0%	100.0%	0.0%	0.0%	100.0%
	수	0	0	3	0	0	3
자격모용사문서작성	비율	4.8%	16.1%	25.8%	25.8%	27.4%	100.0%
	수	3	10	16	16	17	62
전체	비율	8.6%	18.7%	26.6%	21.9%	24.1%	100.0%
	수	62	134	191	157	173	717

■ 중국 내역

단위: 명

세부죄명		중국내역				전체
		실형	집행유예	벌금	선고유예	
변조사문서행사	수	0	1	0	0	1
	비율	0.0%	100.0%	0.0%	0.0%	100.0%
사문서변조	수	0	6	10	2	18
	비율	0.0%	33.3%	55.6%	11.1%	100.0%
사문서부정행사	수	0	0	3	2	5
	비율	0.0%	0.0%	60.0%	40.0%	100.0%
사문서위조	수	19	66	111	3	199
	비율	9.5%	33.2%	55.8%	1.5%	100.0%
사서명위조	수	1	0	0	0	1
	비율	100.0%	0.0%	0.0%	0.0%	100.0%
위작사전자기록행사	수	0	0	1	0	1
	비율	0.0%	0.0%	100.0%	0.0%	100.0%
위조사문서행사	수	31	142	231	23	427
	비율	7.3%	33.3%	54.1%	5.4%	100.0%
위조사서명행사	수	0	3	0	0	3
	비율	0.0%	100.0%	0.0%	0.0%	100.0%
자격모용사문서작성	수	0	17	44	1	62
	비율	0.0%	27.4%	71.0%	1.6%	100.0%

단위: 명

세부죄명		중국내역				전체
		실형	집행유예	벌금	선고유예	
전체	수	51	235	400	31	717
	비율	7.1%	32.8%	55.8%	4.3%	100.0%

나. 선고형 분포

▣ 전체 형량분포

단위: 명, %

세부죄명		형량(개월)												전체
		2	3	4	5	6	8	9	10	12	14	18	24	
변조사문서 행사	수	0	0	0	0	1	0	0	0	0	0	0	0	1
	비율	0.0	0.0	0.0	0.0	100.0	0.0	0.0	0.0	0.0	0.0	0.0	0.0	100.0
사문서 변조	수	0	0	2	0	2	1	0	0	1	0	0	0	6
	비율	0.0	0.0	33.3	0.0	33.3	16.7	0.0	0.0	16.7	0.0	0.0	0.0	100.0
사문서 위조	수	2	2	9	2	32	20	0	6	7	0	5	0	85
	비율	2.4	2.4	10.6	2.4	37.6	23.5	0.0	7.1	8.2	0.0	5.9	0.0	100.0
사서명 위조	수	0	0	1	0	0	0	0	0	0	0	0	0	1
	비율	0.0	0.0	100.0	0.0	0.0	0.0	0.0	0.0	0.0	0.0	0.0	0.0	100.0
위조사문서 행사	수	1	0	10	0	70	52	1	24	10	1	2	2	173
	비율	0.6	0.0	5.8	0.0	40.5	30.1	0.6	13.9	5.8	0.6	1.2	1.2	100.0
위조사서명 행사	수	0	0	0	0	2	1	0	0	0	0	0	0	3
	비율	0.0	0.0	0.0	0.0	66.7	33.3	0.0	0.0	0.0	0.0	0.0	0.0	100.0
자격모용사 문서작성	수	0	0	3	1	8	5	0	0	0	0	0	0	17
	비율	0.0	0.0	17.6	5.9	47.1	29.4	0.0	0.0	0.0	0.0	0.0	0.0	100.0
전체	수	3	2	25	3	115	79	1	30	18	1	7	2	286
	비율	1.0	0.7	8.7	1.0	40.2	27.6	0.3	10.5	6.3	0.3	2.4	0.7	100.0

▣ 징역형 실형 시 형량 분포

단위: 명, %

세부죄명		형량(개월)										전체
		2	3	4	6	8	10	12	14	18	24	
사문서위조	수	0	1	2	5	5	0	2	0	4	0	19
	비율	0.0	5.3	10.5	26.3	26.3	0.0	10.5	0.0	21.1	0.0	100.0
사서명위조	수	0	0	1	0	0	0	0	0	0	0	1
	비율	0.0	0.0	100.0	0.0	0.0	0.0	0.0	0.0	0.0	0.0	100.0
위조사문서 행사	수	1	0	0	11	3	5	6	1	2	2	31
	비율	3.2	0.0	0.0	35.5	9.7	16.1	19.4	3.2	6.5	6.5	100.0
전체	수	1	1	3	16	8	5	8	1	6	2	51
	비율	2.0	2.0	5.9	31.4	15.7	9.8	15.7	2.0	11.8	3.9	100.0

▣ 집행유예 선고의 본형 형량분포

단위: 명, %

세부죄명		형량(개월)										전체
		2	3	4	5	6	8	9	10	12	18	
변조사문서 행사	수	0	0	0	0	1	0	0	0	0	0	1
	비율	0.0	0.0	0.0	0.0	100.0	0.0	0.0	0.0	0.0	0.0	100.0
사문서변조	수	0	0	2	0	2	1	0	0	1	0	6
	비율	0.0	0.0	33.3	0.0	33.3	16.7	0.0	0.0	16.7	0.0	100.0
사문서위조	수	2	1	7	2	27	15	0	6	5	1	66
	비율	3.0	1.5	10.6	3.0	40.9	22.7	0.0	9.1	7.6	1.5	100.0
위조사문서 행사	수	0	0	10	0	59	49	1	19	4	0	142
	비율	0.0	0.0	7.0	0.0	41.5	34.5	0.7	13.4	2.8	0.0	100.0
위조사서명 행사	수	0	0	0	0	2	1	0	0	0	0	3
	비율	0.0	0.0	0.0	0.0	66.7	33.3	0.0	0.0	0.0	0.0	100.0
자격모용사 문서작성	수	0	0	3	1	8	5	0	0	0	0	17
	비율	0.0	0.0	17.6	5.9	47.1	29.4	0.0	0.0	0.0	0.0	100.0
전체	수	2	1	22	3	99	71	1	25	10	1	235
	비율	0.9	0.4	9.4	1.3	42.1	30.2	0.4	10.6	4.3	0.4	100.0

▣ 징역형 평균형량

단위: 명, 월

세부죄명	실행/집행유예	수	평균	표준편차
변조사문서행사	집행유예	1	6.000	.
	합계	1	6.000	.
사문서변조	집행유예	6	6.667	3.0111
	합계	6	6.667	3.0111
사문서위조	실행	19	9.316	5.1430
	집행유예	66	7.045	2.7142
	합계	85	7.553	3.5034
사서명위조	실행	1	4.000	.
	합계	1	4.000	.
위조사문서행사	실행	31	10.065	5.2022
	집행유예	142	7.275	1.8107
	합계	173	7.775	2.9256
위조사서명행사	집행유예	3	6.667	1.1547
	합계	3	6.667	1.1547
자격모용사문서작성	집행유예	17	6.176	1.4246
	합계	17	6.176	1.4246
합계	실행	51	9.667	5.1523
	집행유예	235	7.102	2.1118
	합계	286	7.559	3.0473

끝.